

시 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104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협 조			

I · SEŌUL · U
너와 나의 서울

201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추진 수정계획



2018. 4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input type="checkbox"/>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	
사 회 적 약 배 자 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input type="checkbox"/>	
성 별 분 리 통 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input type="checkbox"/>	■	
일 자 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	
선 거 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input type="checkbox"/>	
타 기 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input type="checkbox"/>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	
정 책 영 문 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input type="checkbox"/>	■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와이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input type="checkbox"/>	
결 재 문 서 공 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	
지 속 가 능 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input type="checkbox"/>	

201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추진 수정계획

당초 위탁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던 DDP의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실무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수행하게 하되 모든 행위의 명목과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사업방법을 대행사업으로 수정·시행하고자 함

I 수정개요

당초계획

- “201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추진계획”(디자인정책과-3222, 2018. 3. 29)
 - 사업방법 : 위탁사업
 - DDP 재산 관리 수탁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교부·집행

계획 수정 근거

- 사업시행의 주체 : 서울시
 - “DDP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사업은 서울시가 (재)서울디자인재단에 관리 위탁한 행정재산인 DDP의 훼손·노후가 심한 시설 개보수, 다양한 행사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보강·구축,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 등이 포함된 서울시 직접 시행 사업임

< 추진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 사업방법수정 : 위탁사업 → **대행사업**

- 동 사업은 행정재산을 개보수하는 자본형성적 사업으로 (재)서울디자인 재단이 서울시를 대신하여 실무를 수행하되, **재단이 하는 모든 행위의 명리와 책임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위탁사업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시행**

〈 판단근거 〉

- “ ‘위탁’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음
- ‘대행’은 이론적·법률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행정실무적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행정기관의 명리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으로 봄
 - ▶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대행사업 비교」(법제처 질의 회신), 조직담당관

□ **계획 수정 내용**

구 분	수정 전	수정 후
사업추진방법	○ 사업방법 :..... 서울디자인재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 사업방법 :.....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업 대행 계약 을 체결하여
향후추진일정	○ '18.3월 : 위수탁계약 체결	○ '18.4월 : 사업대행계약 체결
붙 임	DDP 시설 위수탁계약서(안) 1부	DDP 시설 사업대행계약서(안) 1부
계 약 서	제목 : 위수탁계약서(안)	제목 : 대행계약서(안)
	취지 :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취지 :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 재단이 수탁,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1조(목적)을 재단이 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2조(사업내역)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제2조(사업내역)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사업의
	제6조(사업비 지급) 재단에 위탁하는 제2조의	제6조(사업비 지급)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제2조의
	계약체결년월 : 2018. 3	계약체결년월 : 2018. 4
	계약체결당사자 :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협 (인)	계약체결당사자 : 대표이사 최경란 (인)

※ 당초계획 내용에서 상기 수정 사항 외의 모든 내용은 변경 없이 유지함

II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훼손·노후가 심한 DDP 시설 개보수와 다양한 행사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 보강·구축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최적 시설상태 유지
- 배움터 전시관 시설 보강과 살림터 편의시설 개선으로 기업 및 시민이 이용하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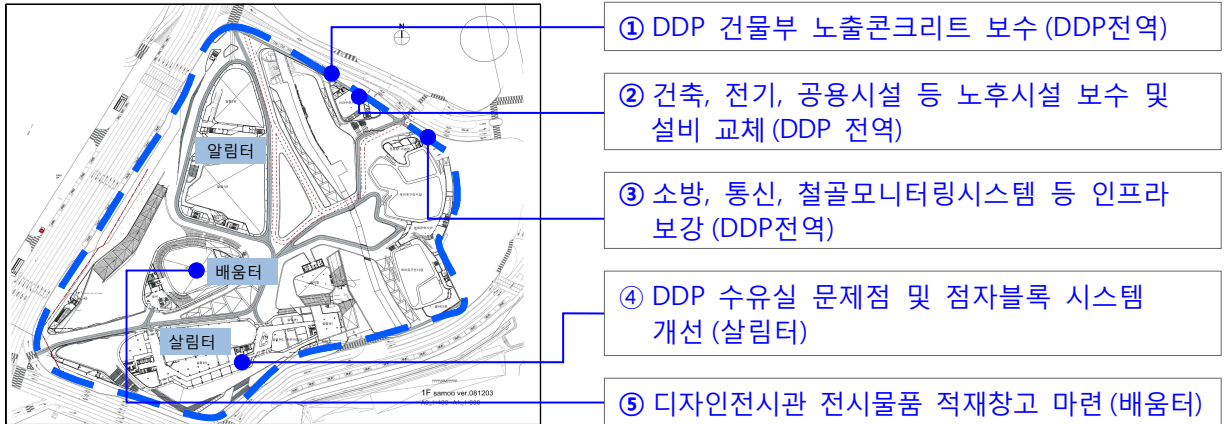
○ 사업기간 : '18. 4월 ~ 11월

○ 소요예산 : 1,855,000천원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위 치	주 요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계			1,855,000
① DDP 시설 개보수	DDP 전역	① DDP 건물부 노출콘크리트 보수	1,705,000
		② 건축, 전기, 공용시설 등 노후 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③ 소방, 통신, 철골모니터링시스템 등 인프라 보강	
②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살림터	④ DDP 수유실 문제점 개선 및 점자블록 시스템 개선	150,000
	배움터	⑤ 디자인전시관 전시물품 적재 창고 마련	

○ 단위사업별 공사 위치



○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계		1,855,000	-	1,330,000	440,000	85,000
1. DDP 시설 개보수	소계	1,705,000	-	1,330,000	340,000	35,000
	① DDP 내·외부 마감 개선	350,000	-	250,000	100,000	-
	② DDP 노후시설 개선	550,000	-	415,000	115,000	20,000
	③ DDP 기반시설 구축	805,000	-	665,000	125,000	15,000
2. 콘텐츠 공간 리뉴얼	소계	150,000	-	-	100,000	50,000
	① 시민 편의시설 개선	100,000	-	-	50,000	50,000
	② 디자인 전시관 개선	50,000	-	-	50,000	-

※ DDP 중장기 개보수 계획 (예산 기준)

(단위:백만원)

예산	사 업 내 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계	14,506	2,576	1,855	5,790	3,175	1,110
	소계	13,040	1,260	1,705	5,790	3,175	1,110
	건축	2,337	447	610	850	280	150
	조경	830	150	70	270	170	170
	기계	2,018.3	58.3	40	180	1680	60
	전기	1,451	361	200	360	450	80
	소방안전	736.7	96.7	90	330	110	110
	통신AV	1,054	124	180	200	200	350
	안내사인	643	23	115	170	215	120
	미디어	1,900	0	400	1,500	0	0
	가구	260	0	0	120	70	70
	정보(전산)	1,810	0	0	1,810	0	0
콘텐츠공간 리뉴얼	1,466	1,316	150	-	-	-	

○ 2017년/2018년 공사내역 비교

(단위 : 천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17년		2018년	
		사업내용	예산	사업내용	예산
계		2,575,520		1,855,000	
1. DDP 시설 개보수	소계	1,260,000		1,705,000	
	DDP 내·외부 마감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노출 콘크리트 보수 • 주요대관 전시 공간 내부 벽면 및 바닥도장 	4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노출 콘크리트 보수 (잔여구간) • DDP 건물부 노출 콘크리트 보수 	350,000
	DDP 노후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 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건축,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31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 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건축, 전기, 기계, 소방, 안전 및 공용시설, 조경, 안내 사인) 	550,000
	DDP 기반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용량 전원 설치공사 • 관수용 스프링클러 설치 • 행사시설, 장비개선 (조명바턴, 빔프로젝터) • CCTV 보강 공사 	54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 미디어스탠드 개선 • 철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화재감지설비 시스템 개선 • CCTV 보강 공사 • 통신실 냉방설비 구축 등 	805,000
2. 콘텐츠 공간 리뉴얼	소계	1,315,520		150,000	
	시민 편의시설 개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수유실 문제점 개선 및 전면 리뉴얼 구축 • 간이점자블록시스템 및 남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확충 	100,000
	디자인전시관 시설 개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전시관 운영 사무실 앞 공간 (하역장 입구)을 활용, 전시물품을 적재 할 수 있는 창고 마련 	50,000
	DDP 편의시설물 개발 및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둘레길, 알림관 로비 행잉 시스템 구축 • 어울림광장 파라솔, 의자, 어린이특화기구 등 편의시설물 구축 	350,000	-	-
	디자이너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터 2층 오픈형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400,000	-	-
	디자인 라이브러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림터 3층 나눔관 회의실 공간에 라이브러리 신규 구축 	395,520	-	-
	디자인박물관 리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액세스 플로어 설치, 수장고 장비 보완, 둘레길 쉼터 전시관 구축 	170,000	-	-
	디자인놀이터 리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운영으로 변경 하여 리뉴얼 사업 취소 	-	-	-

□ 사업추진방법

○ 사업방법 : DDP 재산 관리 수탁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교부·집행

- 계약주체 : 서울시, (재)서울디자인재단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사업비 집행 : 분기별로 재단의 세부집행계획을 검토하고 재단의 신청에 따라 교부

- 교부신청시기 : 매분기 시작월 5일 ('18. 4. 5, 7. 5, 10. 5 - 재단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교부신청 시기 조절 가능)

※ 전분기 사업비 집행현황 및 당분기 집행계획 검토 후 적정사업비 교부

○ 사업비 정산

- 재단은 집행 완료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 즉시 정산하고 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되 최종 정산서 제출은
12. 15 이전 조치 완료

-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예금이자 등은 시에 반납

- 사업 정산서 제출시 사업 완료된 현장의 사업전후 이미지를 포함한 사업
결과보고서도 함께 시에 제출

○ 사업 추진 시 필수 반영사항

-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공사 설계 및 시공시에 유니버설디자인 컨셉 철저히 반영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1월) 및 체크리스트 참조 (<http://ebook.seoul.go.kr>)

- 공사 추진시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감독을 철저히 시행

- '미투(Me Too)운동' 관련 문제 있는 기업의 공사용역 참여 제한

• 공사 용역 참여기업 선정시 신청기업의 대표 등 관계자가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기업이 사업 수행 중 동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재단-사업자 간 계약에 포함하도록 안내

○ 사업 시행도서 영구 보관

- 재단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계 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를 종이와 컴퓨터 파일(.hwp, .dwg, .pdf) 형태로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도서의 .pdf파일 1세트를 시에 제출

• 최초 DDP 건립시의 설계 도면을 기초로 개관 후 변경된 사항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관

○ 편성예산 : 총 1,855,000천원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DDP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DDP 시설 개보수 : 1,855,000천원

□ 향후추진일정

○ '18. 4월 : DDP 시설 개보수 및 리뉴얼 사업대행계약 체결

○ '18. 4월말 : DDP 공간별 개보수 및 리뉴얼 사업 착수

○ '18. 11월말 : DDP 시설 개보수 및 리뉴얼 사업 완료

○ '18. 12. 15 이전 : 시 교부 사업비 정산

붙 임 :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대행계약서(안) 1부. 끝.

2018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대행계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에 의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DDP”라 한다)의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DDP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최적의 운영상태 유지를 위하여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재단이 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역) 시가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2018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사업”
2. 총사업비 : 금1,855,000,000원(금일십팔억오천오백만원)
3.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위 치	주 요 사 업 내 용
① DDP 시설 개보수	DDP 전역	① DDP 건물부 노출콘크리트 보수
		② 건축, 전기, 공용시설 등 노후 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③ 소방, 통신, 철골모니터링시스템 등 인프라 보강
② 콘텐츠 공간 리뉴얼	살림터	④ DDP 수유실 문제점 개선 및 점자블록 시스템 개선
	배움터	⑤ 디자인전시관 전시물품 적재 창고 마련

제3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대행한다.

1. 사업의 시행 및 감독
2. 기타 시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재단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우선 책임을 진다.

④ 재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이가 필요할 경우, 시는 적극 지원 또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기한) 재단은 사업을 2018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의 동의하에 사업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등) ① 재단은 세부사업별 공사 착수시마다 시에 통보하고, 매분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초 시에 보고한다.

② 사업의 관리 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재단에 대행하게 하는 제2조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한다.

1. 계획 수립, 법률 검토 및 자문, 사업자 공모, 설계·시공·감리 용역 시행 등 사업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관리, 결과 검수 등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 사업비
3. 기타 사업 시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개산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업비 청구는 '전(前)분기 집행현황 및 당(當)분기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분기 시작월 5일에 한다. 다만, 사업비 지급 시기는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업비 정산) ① 재단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의 정산시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내역을 포함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자와 잡수입을 포함한 전액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정산 기한 내에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시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 관련 도서의 보관) ① 재단은 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를 종이 및 컴퓨터 파일(.hwp, .dwg, .pdf 등) 문서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 정산시에 모든 도서의 .pdf파일 1세트를 시에 제출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 관련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나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재단에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재단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받거나 각종 분쟁 등이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하는 등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시에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재단”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② 계약이 제①항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재단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가 재단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등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정산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시와 재단이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4.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대표이사 최 경 란 (인)